

# 하르츠 개혁과 독일의 고용기적

Michael Hüther (독일 쾰른 경제연구소(IW) 소장)

## ■ 머리말

2003년 독일의 경제와 사회보장체계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독일의 전체 인구가 8,250만 명이었던 당시 실업인구는 400만 명이 넘는 상태였다. 게다가 2000년 이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고령화를 촉진하는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에 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부담이 점점 커져 사회보장체계의 붕괴 위험마저 있었다. 결국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합의가 도출되었다. 그 결과로 아젠다 2010이 탄생하였다. 일명 하르츠 개혁<sup>1)</sup>은 아젠다 2010의 노동시장정책 부문 개혁의 핵심을 이룬다. 하르츠 개혁은 크게 네 개의 개혁패키지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 개혁패키지는 창업지원제도와 구직자를 지원하는 일자리 중개 및 관리방식 개선 등과 같은 다수의 작은 구체적 개혁과 조치로 구성된다. 여러 개혁 중 그 어떤 것보다 포괄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실업부조와 사회부조의 통합(하르츠 IV)<sup>2)</sup>이었다. 하르츠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노동시장

1) 폭스바겐 이사 출신으로 2002년 연방정부가 세운 “노동시장에서 현대적인 서비스(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페터 하르츠(Peter Hartz)의 이름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위원회도 하르츠 위원회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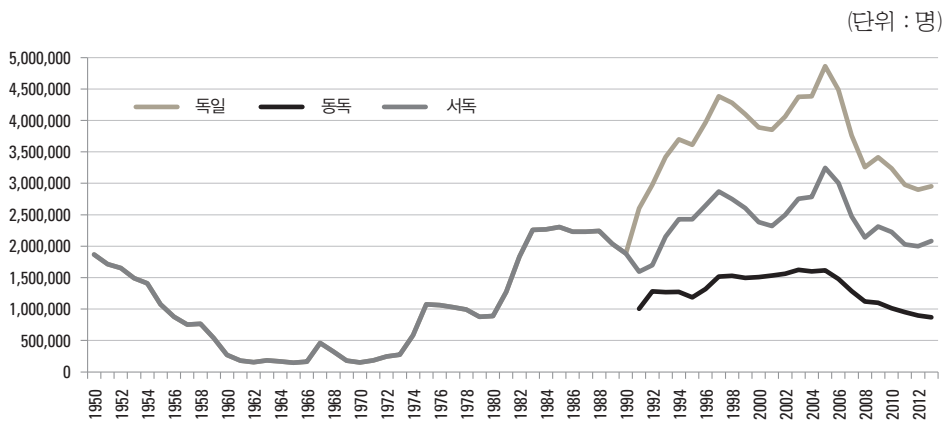
2) 하르츠 개혁의 개별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고할 것.

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었다.<sup>3)</sup>

## ■ 실업률 추이

하르츠 개혁이 노동시장 상황 개선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 2005년 2월 독일의 실업자 수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 인구는 거의 530만 명에 달했다. 당시 독일에서는 실업자 수가 600만 명을 초과하면서 다시 바이마르공화국 실업사태<sup>4)</sup>를 겪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논의가 일어나기도 했다. 독일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고 ‘유럽의 병자’<sup>5)</sup>라고 불리기까지 했다. 실업률은 11.3%로 EU 회원국 중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독일의 실업률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2005년 490만 명이었던 연평균 실업자 수는 2013년 300만 명 이하로 하락했다

[그림 1] 독일의 실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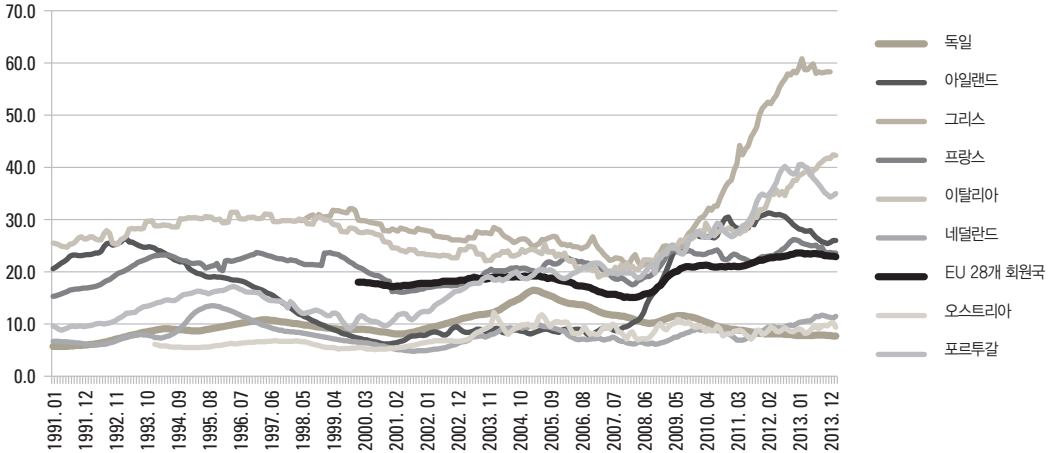
자료 : Bundesagentur für Arbeit.

3) 하르츠 개혁을 통한 유연성 확대뿐 아니라, 노사관계의 유연화 및 그로 인한 자율적 임금결정이 노동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Dustmann et al., 2014).

4)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년) 시절 중 1932년에 독일은 실업자 수가 전체 경제활동가능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백만 명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5) “The real sick man of Europe”, The Economist. 19. Mai 2005.

[그림 2] 유럽연합 주요국의 청년실업률



자료 : Eurostat.

(그림 1 참조). 독일은 문제아에서 모범적 모델이 되었다. 독일의 실업률은 2013년 5.3%까지 낮아졌고 오스트리아에 이어 EU 회원국 중 실업률이 두 번째로 낮은 국가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해외에서 독일의 모범이 될 만한 노동시장정책 사례를 찾는 독일의 노동시장 전문가가 없다. 오히려 해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독일의 사례를 배우려 한다.

청년실업 문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청년실업률, 즉 만 25세 미만 인구의 실업률은 2005년 15.8%에서 2013년 7.8%까지 떨어졌고, 현재는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를 제치고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 ■ 고용인구 추이

사실 실업률 감소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고용인구의 증가다. 1998년에서 2000년 사이 신경제 붐(New-Economy-Boom)으로 약 18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었고, 그 이후 발생한 위기 중에도 독일의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2006년 이래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고 매년 기록이 갱신되면서 고용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고용인구가 4천만 명을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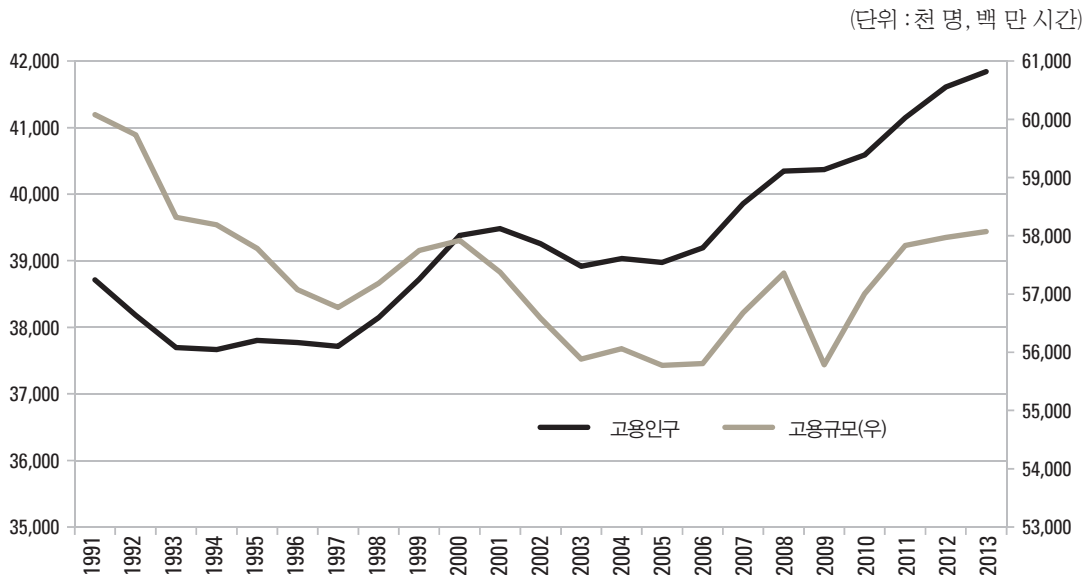
성하면서 독일연방공화국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했음에도 2011년에 고용인구는 4,100만 명을 돌파했고, 2012년 가을에는 일시적으로 고용인구가 약 4,200만 명에 달하기도 했다. 유럽을 휩쓴 국가부채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노동시장은 견재했다. 2005년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일자리만 해도 약 260만 개에 달한다. 이와 같은 독일의 고용성장은 무엇보다도 (다른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인) 하르츠 개혁 덕분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잠재인력이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업자의 노동시장 통합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조용한 잠재인력'의 활성화 등이 보다 효율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인 것이다. 2000년 이후 고용률은 71%에서 77%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개혁은 특히 연령이 높은 세대의 고용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 6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21%에서 47%로 2배 이상 증가했다. 55~59세 인구의 고용률은 같은 기간 66%에서 79%로 증가했다. 특히 고령 여성의 고용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금수급권 축소 및 조기은퇴 가능성 제한은 당시 많이 우려되었던 것처럼 고령자의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고령자들의 정년이 늦어졌는데, 60~64세의 고용인구 비율은 2000년에 20%였으나 2011년에는 44%를 기록했다.

독일은 OECD 회원국 중 노동시장 성적이 중간 수준이었다가 최상위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고용률 68%를 기록하고 있는 독일보다 고용률이 높은 나라는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과 네덜란드뿐이다. 미국과 영국은 약 10년 전만 해도 독일보다 고용률이 현저하게 높았지만, 지금은 크게 감소한 상태이다. 2011년 미국과 영국은 각각 경제활동가능연령 인구의 단 62%, 그리고 65%만이 고용인구로 집계되었다. 독일과 유사하게 고용률이 현저하게 개선된 다른 나라는 오스트리아 정도밖에 없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감소한 전체 고용규모도 다시 증가하였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노동시간은 23억 시간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초반 구 동독에서 체제 전환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손실들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었다(그림 3 참조).

현재 독일 노동시장이 일반적인 경기회복기에 기대되는 정도의 활성화를 넘어서는 수준의 호황기를 경험하고 있음은 고용실태를 나타내는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에는 1.3%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달성되어야 고용률이 높아질 수 있었다. 고용규모 증가를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이 2.2%는 되어야 했다. 2011년까지 고용률 증가를 위한 최소 경제성장률은

[그림 3] 독일 고용인구와 고용규모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1.0%로, 그리고 고용규모의 증가를 위한 최소 경제성장률은 1.7%로 떨어졌다(Schäfer/Stettes, 2012). 성장 대비 고용인구 밀도의 증가는 이러한 변화의 한 결과이자 하르츠 개혁을 통해 달성 가능했던 노동투입 유연성 확대의 결과이다.

### ■ 고용의 질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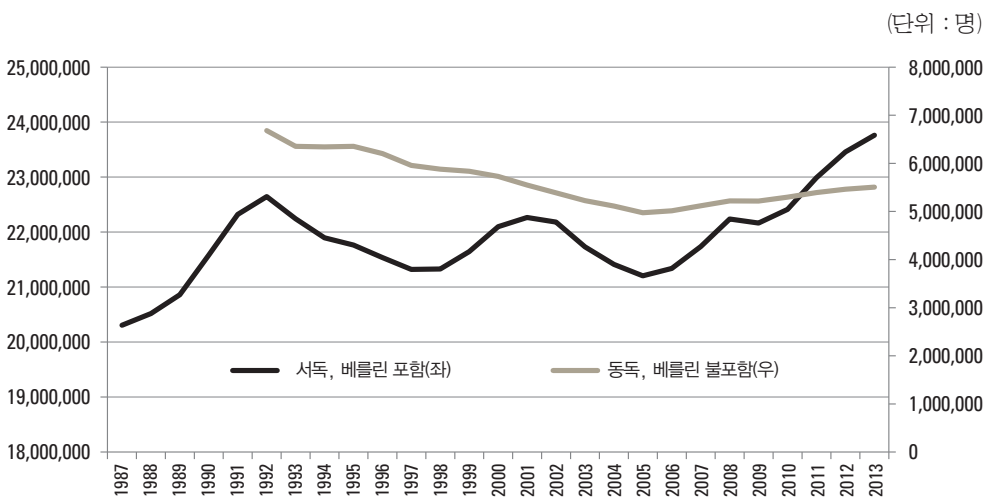
독일의 고용률이 현저히 개선되자, 새로 생겨난 일자리의 질, 그리고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비판은 새로 생겨난 일자리가 정규직 고용의 확대가 아닌, ‘불안정한’ 고용의 확대를 의미하며, 같은 고용규모가 다수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분산되었을 뿐이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실질 데이터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 아젠다 2010 개혁 이후 창출된 일자리 중에는 그 이전에 생겨난 일자리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일자리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 2005년 이래 구 서독 지역에 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새로운 일자리가 260만 개 생겨났다. 구 서독 지역의 고용인구는 2013년 2,380만 명으로 특히 신경제 붐(New-Economy-Boom) 때보다 높고 그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그림 4 참조). 구 동독 지역에서는 1990년대 초 이래 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정규직 일자리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05년 그 감소 추세가 처음으로 중단되었고 고용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2년까지 53만 4천 명이 늘어났다.

- 신규 일자리 중 상당수는 파트타임직이다. 2005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사회보장 의무가 있는 일자리가 220만 개 생겨났고, 그중 130만 개가 파트타임직 그리고 약 90만 개가 풀타임직이었다. 대부분의 파트타임직 근로자는 파트타임직을 선호해 그러한 일자리를 선택했다. 설문조사 결과 파트타임직 종사자 중 풀타임직을 원했지만 풀타임직을 구하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은 단 16%에 불과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12). 과거에는 여성 취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파트타임직이 증가하였다. 파트타임 일자리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비취업자 또는 여성 실업자 중에서 77%는 취업을 원하는데, 52%는 파트타임직으로의 취업만을 원한다는 입장이며, 이는 1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 비취업자 또는 실

[그림 4] 독일 사회보험 적용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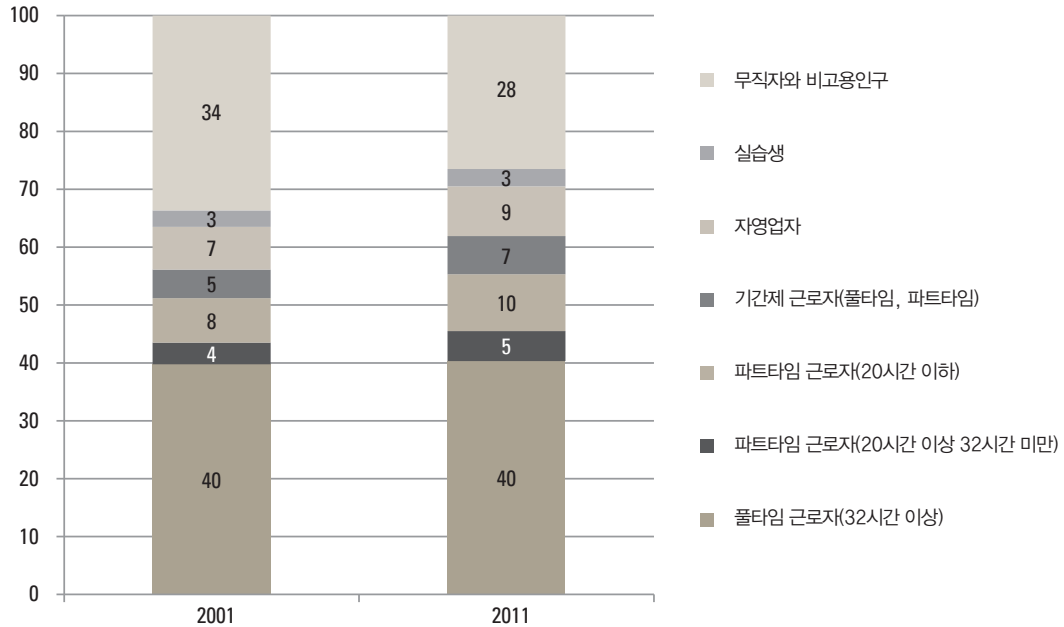
자료 : Bundesagentur für Arbeit.

업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Schäfer et al., 2013).

- 미니잡의 증가 역시 하나의 풀타임 일자리가 여러 일자리로 나뉘었다는 가설을 입증해주지 못한다. 저임금 근로자의 수는 2003년 미니잡 개혁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하였지만, 2004년 이래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저임금 일자리를 부업으로 둔 근로자의 수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 경우 근로자는 부업으로 수행하는 미니잡 외에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주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고용 불안정성이 확대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수가 증가했다는 주장 역시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다. 2005년을 제외한 다른 기간에는 전체 고용인구 중 (실습생을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졌으나,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통계 집계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 파트타임직과 기간제 일자리, 그리고 심지어는 자영업까지도 생존보장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일자리 또는 직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일명 ‘비전형’ 고용형태에 대해서 고용불안정의 위험이 있다고 자주 지적되곤 한다.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과 미래안정성 수준이 좌우되고 노동시장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시장 상황의 개선을 입증하는 증거들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전형 고용형태의 증가는 전체 고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2001/2011년에 실시된 10년 단위 비교를 통해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가 나뉘어진 게 아니라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다시 말해 그 이전에는 기회가 없던 사람들에게 고용기회가 열린 것이다.
- 저임금 고용의 추이를 살펴보면 유사한 현상이 발견된다.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증가 추세는 이미 1990년대에 시작되었고 2007년에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22%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아젠다 2010, 그리고 하르츠 개혁을 저임금 고용 확대의 유일한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의 확대가 임금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의 희생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2000년 이래 전체 고용인구에서 고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낮은 것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다. 저임금 고용의 확대는 다시 말해 고용률을 높이는

[그림 5] 독일의 고용형태별 고용인구

(단위 : %)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저임금 고용은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킨 성공적인 노동시장정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제비교에서는 저임금 고용 덕분에 독일이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 우수한 고용률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그림 6 참조). 벨기에와 같은 나라들은 독일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지만, 저임금 고용이 작아서 전체 인구 중 고용인구의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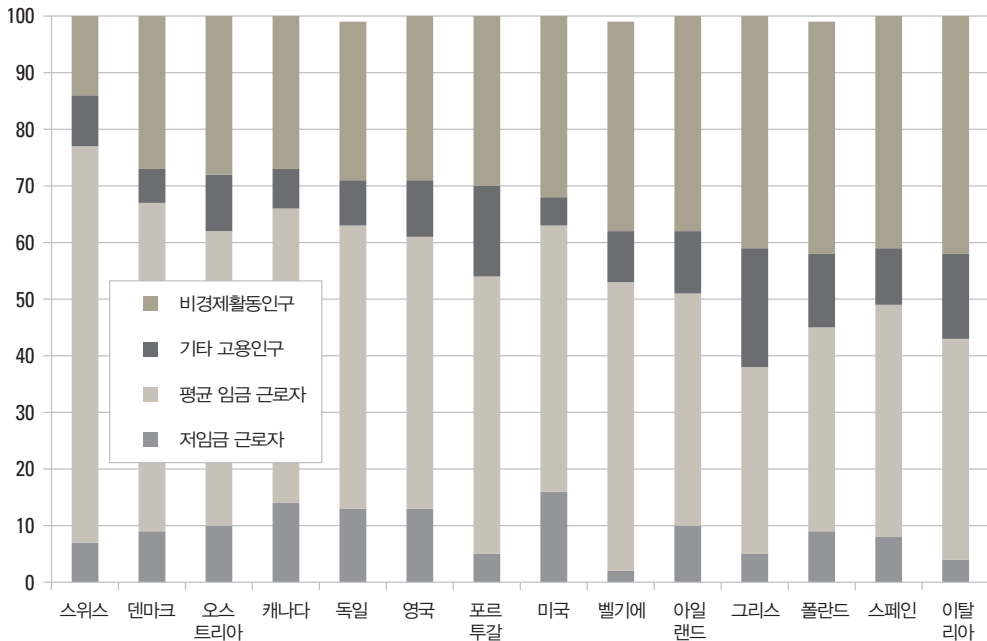
## ■ 하르츠 개혁의 영향

하르츠 개혁은 앞서 소개한 노동시장 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르츠 개혁하에서 진행된 모든 개혁들은 독일 노동시장의 유연화, 실업자의 취업 장려, 기업의 일자리 창출 장려를 목



[그림 6] 주요국의 임금수준별 고용인구(2010년)

(단위 : %)



자료 : OECD.

표로 하였다.

하르츠 개혁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이다. 개혁 이전, 즉 2004년 이전에는 사회보장 대상자로서의 조건을 갖춘 실업자들에게 실업수당이 지급되다가 실업부조가 지급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나 실업수당이나 실업부조를 수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사회부조가 지급되었다. 하르츠 개혁 이후에는 기존의 실업부조 수급자와 사회부조 수급자에게 실업수당 II(Arbeitslosengeld II(ALG II))와 사회수당(Sozialgeld)이 지급된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에게는 실업수당 II(ALG II)이 지급되며,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자로서 최소 한 명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수급권자와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는 자에게는 사회수당(Sozialgeld)이 지급된다. 실업부조는 과거에 무기한 제공되었고 최종 순소득의 53%, 자녀가 최소 1명일 경우 57%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실업부조가 폐지되었고 사회보장체계에 실업수당 II(ALG II)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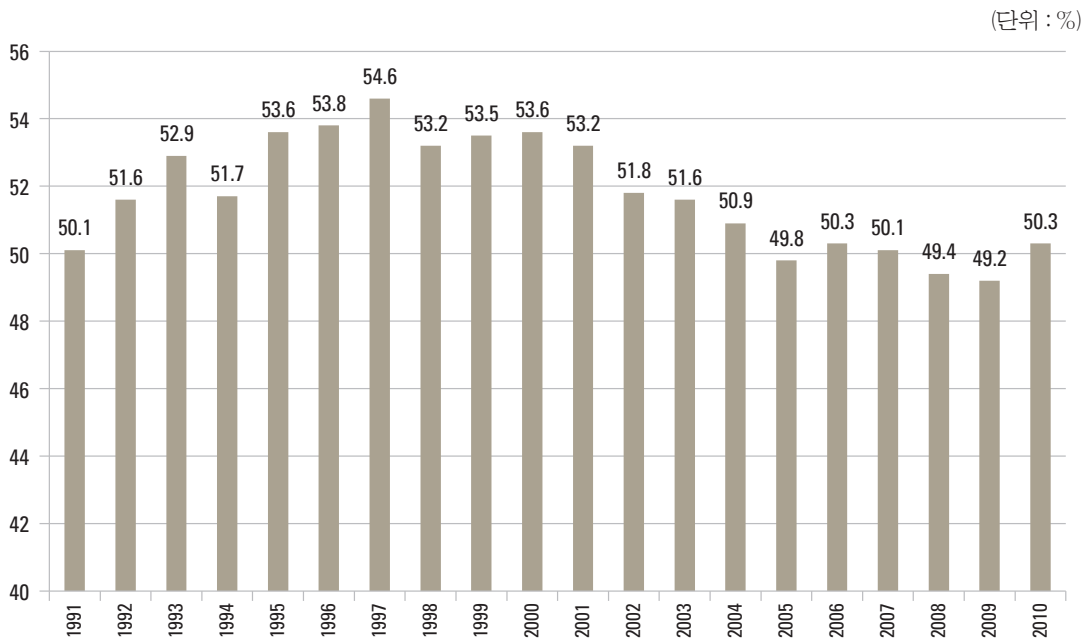
새로 도입되었다. 실업부조의 폐지로 실업자들은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동기가 생겼다. 이하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하르츠 개혁의 조치들을 소개한다.

- 시간제 노동에 대한 규제 완화로 시간제 노동 부문의 고용률이 올랐다. 2002년 30만 명이었던 시간제 근로자 수는 8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노동시장·직업 연구소(Institut für Arbeitsmarkt-und Berufsforschung)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었다면 추가 적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Jahn/Weber, 2013).
- 2003년에 실시된 미니잡 개혁으로 미니잡은 많은 이들에게 더 매력적인 근로형태로 변하였고, 고용인구의 증가가 가능했다. 전업으로 저임금 고용(geringfügige Beschäftigung)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약 60만 명 증가하였고, 그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업으로 저임금 고용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2002년부터 140만 명 증가하였고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의 지급기간 축소로 수급자 개인에게는 상황이 악화되었을 수도 있지만, 지급기간 개혁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실업보험은 결코 적금 개념의 보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더 오래 납입한 가입자는 납입하는 기간 동안 사회적 안전장치의 혜택을 적용받지만, 납입 기한에 비례하여 더 오래 또는 더 많은 액수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적 건강보험 가입자가 가입 기간에 비례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고령자의 실업수당 지급기간 축소는 더 나아가 부작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다. 개혁 이전에는 실업자가 최대 32개월까지 실업수당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아예 조기은퇴를 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실업보험 납입자들이 짊어져야 했다(Pimpertz/Schäfer, 2009). 지급기간을 18개월로 축소한 결과, 우려했던 것과 달리 기초보장 수급자로 전환되는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기존 직업활동을 더 오래 유지하고자 하는 고령자의 수가 늘어났다.

## ■ 하르츠 개혁이 소득분배 불균형을 야기했다는 비판

하르츠 개혁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노동시장 상황 개선을 위해 독일이 사회적으로 큰 대가를 치렀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비전형 고용의 확대, 실업부조 제도의 폐지, 실업수당 수급기간의 축소로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사회의 양극화가 촉진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소득이 평균 소득의 60% 미만인 저소득층이 하르츠 개혁 이후에도 기존의 14% 수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산층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에서 150% 사이인 중산층은 하르츠 개혁 이후 큰 변화 없이 계속해서 전체 인구의 약 50%를 차지한다(그림 7 참조). 이처럼 실질 데이터들은 하르츠 개혁이 분배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그림 7] 독일 전체 인구 중 중산층 비율



주 : 중산층=소득이 평균 소득의 80~150%인 사회계층.

소득=가계구성을 고려하고 실수요를 반영한 1인당 순소득(등가소득).

자료 : SOEP v28(자체 계산).

## ■ 결론 및 전망

결론적으로 하르츠 개혁이 2005년 이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 상황 개선에는 아젠다 2010, 그리고 무엇보다 하르츠 개혁 덕분에 달성 가능했던 독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가장 크게 기여했다. 하르츠 개혁은 독일이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견인차가 될 수 있게 해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하르츠 개혁이 시작된 이후 독일 노동시장 상황은 그것이 결코 녹슬거나 유연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노동시장의 제반 여건만 제대로 갖춰지면 독일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유연하고 경쟁력 있음을 입증해주었다. 물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일자리가 없는 수백만 명의 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젠다 2010 개혁 정책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계속해서 개선된다면 완전고용 달성도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하르츠 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에 기여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을 뿐 아니라, 부정적인 분배효과를 야기하지도 않았다. **KLI**

### 〈부록〉 하르츠 법 개괄

노동시장	
하르츠 I과 II (Hartz I & II) <sup>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의무와 실업자에 대한 요구 강화, 일자리 거부 시 입증책임</li> <li>· 인력알선 대행업체 설치</li> <li>· 임금수준에 따른 실업부조 산정 폐지</li> <li>· 창업자와 1인기업(Ich-AG)을 위한 재정지원 도입</li> <li>· 시간제고용(Zeitarbeit)의 경우도 임금협약 체결 의무화/근로자파견법(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자율화</li> <li>· 52세 이상 피고용인의 기간제 고용 조건 완화(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sup>2)</sup></li> <li>· 미니잡과 미디잡에 대한 저임금고용 부문 규정 재정비(2003년 4월 1일부터)</li> </ul>
하르츠 III (Hartz III) <sup>3)</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고용청이 Bundesanstalt für Arbeit에서 Bundesagentur für Arbeit로 개칭, 지역고용청(Arbeitsamt)을 고용지원센터(Agentur für Arbeit)로 개칭 : 조직 개편</li> <li>· 창업자를 위한 지원금(Überbrückungsgeld)을 의무지원금으로 제공</li> <li>· 구직자의 협조 의무 강화</li> <li>· 고령자 파트타임근로(Altersteilzeit) 조건 완화</li> <li>· 일자리 창출조치(ABM) 규정 완화</li> <li>·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실업보험 최소 가입기간은 2년(과거에는 3년)</li> <li>· 예를 들어 대량실업 사태 시 지원(Transferleistung)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li> </ul>

<p>하르츠 IV (Hartz IV)<sup>9)</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이 가능한 부조대상자 및 이러한 부조대상자와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는 자<sup>5)</sup>는 기존 실업부조와 사회부조 대신, 필요한 지원 규모에 맞춘 '구직자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실업급여 II)' 및 사회수당을 지급받음</li> <li>· 실업급여 II는 일반적인 경우 총괄액으로 지급되는 표준지원금(독거인 : 서독 지역-345유로, 동독 지역-331유로)과 적절한 수준의 주택비 및 난방비 지원으로 구성. 또한 입증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임신부의 경우) 및 일시불로 지급되는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기본 의복 구입) 추가적 지원 가능</li> <li>· 경제활동 가능한 부조대상자는 모두 법적 연금, 건강보험, 돌봄보험에 가입</li> <li>· 과거 실업수당 수급 경력이 있는 자는 실업급여 II 이외에 2년 동안 낮아지는 추가지원금을 제공받음</li> <li>· 실업급여 II 수급자에게 모든 종류의 합법적 일자리 수용을 요구할 수 있음. 단 임금이 법적 기준이나 관행 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해당 직업이 만 3세 미만의 자녀 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과 병행 불가능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음.</li> <li>· 구직자가 제시받은 일자리를 거부할 시에는 실업급여 II가 3개월간 약 100유로 인하되어 지급</li> <li>· 모든 실업급여 II-수급자는 공익적이며 부수적인 추가직업 활동('1유로잡')을 할 수 있음. 이전에는 사회부조 수급자들에게만 허용되었음. 이 경우 실업급여 II 외에 노동시간 1시간당 1 내지 2유로 상당의 경비보상이 지급</li> <li>· 추가벌이 가능성 확대 : 평균적으로 실업급여 II-수급자들은 순소득의 15 내지 20% 소유 가능</li> <li>· 노동중개에이전시와 지자체의 협력공동체('잡-센터')는 실업급여 II-수급자와 그들의 가족을 돌봄. 69개 광역자치단체(Landkreis)와 자치시(Kreisfreie Stadt)가 이들을 자체 관리.</li> <li>· 구직자 대비 중개자의 수가 개선될 것 : 일반적으로 1:50으로, 15세에서 25세 사이 청소년/청년 구직자 대비 중개자는 1:75로 개선</li> <li>· 실업급여 II를 수령하지 않는 저소득 부모에게 자녀수당 외에 3년 동안 자녀당 월 최대 140유로 상당의 자녀보조금 지급</li> </ul>
---	--

주 : 1) 하르츠 I과 II는 2003년 1월 1일 발효됨(연방관보 BGBl 제1권 제87호 2002년 12월 30일, 하르츠 I p.4607, 하르츠 II p.4621).

2) 유럽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52세 이상의 피고용인과 무기한 고용 기한(unbegrenzte sachgrundlose Befristung) 노동계약 체결은 반차별규정(Rahmen-Richtlinie 2000/78/EG)에 위배된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연방노동재판소는 2006년 4월 26일 무효하다고 판결하였다.

3) 하르츠 III 은 2004년 1월 1일 발효됨(연방관보 BGBl 제1권 제65호 2003년 12월 27일, p.2848).

4) 하르츠 IV는 2005년 1월 1일 발효됨(연방관보 BGBl 제1권 제66호 2003년 12월 29일 p.2954).

5) 생활공동체(Bedarfsgemeinschaft) : 단기적 별거 중 부부/파트너도 포함, 미성년 자녀와 그 자녀의 동거인도 포함.

---

---

## 참고문헌

---

---

- Dustmann, Christian/Fitzenberger, Bernd/Schönberg, Uta/Spitz-Oener, Alexandra(2014) : From Sick Man of Europe to Economic Superstar: Germany's Resurgent Econom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Band 28, Nummer 1, S. 167~188.
- Jahn, Elke/Weber, Enzo(2013) : Zeitarbeit: Zusätzliche Jobs, aber auch Verdrängung, IAB Kurzbericht Nr. 2, Nürnberg.
- Pimpertz, Jochen/Schäfer, Holger(2009) : Was kostet der vorzeitige Ausstieg aus dem Erwerbsleben, in: IW-Trends, Vierteljahresschrift zur empirischen Wirtschaftsforschung, Jahrgang 36, Heft 1/2009, S. 19~35.
- Schäfer, Holger/Stettes, Oliver(2012) : Wachstum und Beschäftigungsperspektiven, in: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Hrsg.), Wirtschaftswachstum?!, Köln, S. 225~242
- Schäfer, Holger/Schmidt, Jörg/Stettes, Oliver(2013) : Beschäftigungsperspektiven von Frauen, iw-Positionen Nr. 57, Köln.
- Statistisches Bundesamt(Hrsg.)(2012) : Mikrozensus. Bevölkerung und Erwerbstätigkeit. Stand und Entwicklung der Erwerbstätigkeit, Fachserie 1, Reihe 4.1.1, 2011, Wiesbaden.
- The Economist, The real sick man of Europe, 19. Mai 2005.